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수정은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 오영훈 도지사님! 도민들의 반대가 안보입니까?

①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공청회 참석
2024년 9월 9일과 10일에 제주시(9일, 200명 참석)와 서귀포시(10일, 300명 참석) 도민공청회 참석(온라인, 서면 의견서 800건 반대 의견 접수).



② 공청회 전, 9월 6일 기자회견과 반대 서명부 제출(716명이 서명한 헌장 제정 반대 서명부 제출)



③ 9월 6일부터 제주지킴이운동본부에서 제주도청 앞에서 헌장 제정 반대 피켓 시위 및 텐트 농성 시작(현재까지 진행 중)
• 헌장 제정 반대 항의 전화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1,500건 이상) 진행 중.



④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반대와 관련하여 제주도민연합과 거룩한방파제의 단체명으로 지방지 신문에 반대 요구사항의 전면광고를 4차례 보도.



⑤ 10월 27일에 인권헌장 반대 연합 예배로 영락교회에서 모임(1천 명 이상).
• 11월 9일, LED차량으로 반대 홍보 활동 시작.



⑥ 11월 11일, 17일,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제6차 거룩한방파제 제주국도순례 선포식(300명) 개최 헌장 반대 발언과 삭발식 진행.



⑦ 11월 20일, 인권헌장 반대단체와 도지사의 면담 진행.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논의



⑧ 11월 24일 제주삼양교회,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연합예배 및 포럼'(600명)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폐지를 위하여 12월 10일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릴레이 금식, 매일 도청을 한 바퀴씩 돌면서 도민들이 기도함.



• 천막 철야 농성 시작(12월 1일)
• 12. 6(금) 제주평화인권헌장 4차 제정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추가 토론회 2회로 도민 의견 수렴하기로 함)



⑨ 12. 8 연합예배 및 포럼(서귀포 법환교회), 강사 : 길원평 교수, 현숙경 교수(400명)



⑩ 12. 10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촉구 기자회견(도청 앞).



⑪ 2025. 1. 19(주) 제주도청 앞 '초교파 연합 예배 및 기도회'(500명)



⑫ 1월 24일 TV토론회 진행(반대 측 : 조영길 변호사, 강종록 의원)



⑬ 2월 13일-14일, 오영훈 도지사의 '2025년 제주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인권헌장 반대 발언과 피켓으로 의견 전달.



⑭ 2월 23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앞, '제주평화인권헌장안 폐지를 위한 연합예배와 기도회'(눈이 오고 강한 바람 중에도 500명 이상 참석)



⑮ 3월 28일, 제주도청 앞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수정안 반대 및 폐지촉구 기자회견'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제정 과정과 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헌장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이다.(표준국어대사전) 선언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덕적 구속력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된다. 특정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헌장을 제정하려 할 때, 헌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모두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로 세워졌다. 형식적인 도민참여단 100명도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토론하며 인권헌장 초안을 완성하였다. 70만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2. 공청회 또한 절차상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공청회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제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공청회 당일에 공청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반대를 강하게 외치는 도민들을 경찰과 공무원이 막고 그 뒤에서 사회자와 발표자가 마이크를 들고 몇 분 동안 내용을 읽고는 '이것으로 그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하며 끝냈다. 다른 지역의 인권헌장 공청회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행된 예가 없었다.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해서 선포식까지 진행하려는 것이 오영훈 도지사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평화와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시민들이 제주도를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3.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차별 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인권과 관련하여 편향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우대하여 제정위원들로 구성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4.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1)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다른 문제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며 보호,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라고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공격성이 있다. 우리가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려는 사람들을 하지 말도록 법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선택 행동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제정 단계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저항을 하는 것이다!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저항의 수단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헌장안의 제정 전에도 격렬히 반대가 있지만 제정된 후에도 폐지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신앙과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본질적 성격이기 때문에, 반대와 폐지의 격렬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폐지하라!**

격렬하게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을 평화인권헌장안에 넣어서 강행한다고 하면 제주 사회는 충돌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평화인권이라는 헌장안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면 다들 우습게 보는데, 우 양극화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5.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수정안을 거부하며, 오직 폐지만을 원한다!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위원들은 헌장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 수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대 활동과 집회에 참여했던 도민 수천 명의 98%는 인권 헌장의 '오직 폐지'만을 원하며, 거룩한방파제(시민단체 연합)와 변호사, 전문가들은 끝까지 폐지만을 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 헌장을 수정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 제주도청은 소수의 사람들이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수정안을 만드는 것조차 발생하는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 제주도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6. 우리가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방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헌장안 '제1조 ㉓ 도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장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 일부 조항을 빼더라도 원인과 큰 차이가 없다. 이 헌장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측에서 얼마든지 빠진 내용이 헌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넣을 수 있다.

* 헌장안 '제40조(헌장의 개정) ① 도민은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장 개정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헌장 개정 시 도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도민의 합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지금은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수정안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라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제정하겠다고 하겠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했던 조항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조용히 개정을 추진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헌장안 제40조의 개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 또한 도민의 합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방적인 개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제주도청이 진행하려면 공개토론회를 준비하여 적극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공청회 개최를 강행했으며, 헌장 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지사의 퇴진 운동을 공식화할 것이다!

* 우리는 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주 거룩한방파제

[참가단체] 거룩한방파제(제주)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행복한우리들컴퍼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